

KBIZ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
수 신 전 조합원업체 대표이사

(경유)

제 목 고용노동부의 '임금구분지급제' 도입 및 체불예방 관련 의견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임금지급제 도입 및 체불 예방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첨부양식에 의거 오는 4월 7일(화) 16:00 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(jcshin@kosis.or.kr 또는 Fax.02-588-3671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'임금지급제' 제도 개요	
'임금지급제' 제도 주요내용	○ 중소기업에서 협력사에 지급하는 임금지급 구분 지급 의무 ↳ 협력사와의 계약(자재비+임금에 대한 총액)시 자재비와 임금 각각 구분 지급 ○ 임금지급 확인 + 미지급 시 노동부장관 통보 의무 ↳ 임금 구분 송금 후 협력사에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확인 및 미지급 시 노동부 통보 ○ 협력사의 임금 목적 외 사용 제한 의무 ↳ 협력사에 임금으로 구분하여 금액 송금시 타용도 사용 제한 의무
제재수준	위반 시(매월 단위) 500만원(수급인이 임금 비용을 목적 외 사용시 1천만원) 이하 과태료 부과
시행시기	제도 시행 준비 기간 및 연간 단가계약 등 회계연도 단위 도급계약 특성 고려 '27.1.1. 시행
적용대상	일반적 임금지급 구분 지급의무를 법률로 규정, 업종규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- 건설,조선업종을 우선 적용업종으로 추진, 해당업종 중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도급금액규모 등을 구체화 *예(건설분야) : 공공건설(3천만원이상) + 민간건설(50억이상 단계적추진)

첨 부 : 1.'임금지급제' 추진시 애로 및 건의사항 양식 1부.

2.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임금지급제 도입 및 체불예방 간담회 자료 1부. 끝.

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
이사장 김 성 태



전결(2026/04/06)

대리 홍태훈

부장 신정철

전무이사 한기원

협조자

시 행 회원사업부-30호 (2026. 04. 06.)

접 수

우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, 4층(조선회관) / <http://www.kosis.or.kr>

전화 (02)587-3121 전송 (02)588-3671 / jcshin@kosis.or.kr / 공개